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088,957,141 | 32,668,714 |
| 일반회계 | 1,050,925,163 | 31,527,755 |
| 특별회계 | 38,031,978 | 1,140,959 |
| 기타특별회계 | 38,031,978 | 1,140,959 |
| 상수도 | 35,768,862 | 1,073,066 |
| 의료급여기금 | 1,412,660 | 42,380 |
| 자활기금 | 521,996 | 15,660 |
| 주민소득지원기금 | 235,705 | 7,071 |
|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| 92,755 | 2,783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998,432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2,668,714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,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.